

#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옥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년월일 : 2023. 01. 27.  
발의의원 : 김정옥, 이태순  
하병문, 이영애  
전경원, 김지만  
김재우, 김원규  
조경구, 윤영애  
이성오, 육정미  
허시영, 박소영  
의원(14명)

## 1. 개정 이유

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장 가까이할 대구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제명 변경(제명)
- 나.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렬(안 제6조)
- 다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보호사업의 보완(안 제6조의2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조례안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##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제9호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소상공인 보호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
2.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
3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

4.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
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u>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<u>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5조에 따른 <u>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</u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11.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9조의6에 따른 <u>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</u></p> <p>1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6조(소상공인 지원사업)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6. ~ 8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9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소상공인 보호사업) 시장</u><br/><u>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</u><br/><u>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</u><br/><u>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|

1. 「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
2.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
3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
4.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 관 계 법 령

## 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)** ① 정부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 [본조신설 2016. 1. 27.][제12조의3에서 이동 <2021. 7. 7.>]

## 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**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**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.

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,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

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월(月)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21. 1. 26.>

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

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「고용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,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.

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(月)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·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·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주”는 “자영업자”로 본다. <개정 2019. 1. 15.>

1.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·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(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)·제7항,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.

2.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·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25조,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.

3.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1. 7. 21.]